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9. 2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9.9. 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9.9.10.
- 다. 상정일자 : 제2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2019.9.2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조만호】

가. 제안이유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등 주민부담 사항을 행정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부설주차장 운영 및 시간(안 제2조 ~ 안 제3조)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대상, 징수 및 방법(안 제4조 ~ 안 제6조)
- 자동차 훼손, 도난 등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안 제7조)
- 지도·점검(안 제8조)
- 시행규칙(안 제9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제정조례안은 내부 규정을 통한 위탁운영 방법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등 주민부담 사항을 행정의 효율과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
- 안 제2조, 안 제3조 부설주차장 운영 및 시간을 규정함.
- 안 제4조 ~ 안 제6조에서는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대상, 징수 및 방법을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자동차 훼손, 도난 등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
- 안 제8조에서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함.

○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근거하여 현재 내부 규정만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 유인정산 방식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차요금 감면, 청소년수련원과 주차면수의 비율 조정 문제, 위원회 회의 참석 등 공적 업무를 위해 내방하는 차량에 대한 추가할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민원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운영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사항

○ 주차장 현황

구분	계	지상	지하1층	지하2층
주차면수(대)	364	8	104	252
면적(m ²)	10,984.97m ²	762.29m ²	3,435.72m ²	6,786.96m ²

○ 주차면 현황

구분	계	일반	여성	전기차	경차	버스	장애인	관용차
주차면수(대)	364	202	74	4	18	4	8	54

○ 정기주차 운영현황

- 총 364면 중 직원 정기주차 차량 177대, 상주기관 차량 13대(52%)
- 주차요금 : 최초 1시간 무료(초과 10분당 500원) ※ 2급지 상당 요금

구분	일반	경차	저공해차	다둥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2자녀	3자녀		
요금	30,000원	15,000원	15,000원	21,000원	15,000원	6,000원	6,000원
할인율	0%	50%	50%	30%	50%	80%	80%

○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조례	규정	규칙	미제정
3개구	12개구	4개구	서울시, 6개구
성북, 양천, 중랑구	강북, 관악, 광진,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송파, 용산, 은평, 종로, 중구	강남, 강동, 서초, 성동구	서울시 강서, 구로, 금천, 노원, 마포, 영등포구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9-121 관련
----------	--------------

발의년월일 : 2019. 9.

발 의 자 : 김종선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정기주차권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5조 단서조항을 “정기주차요금과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수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단서조항을 “정기주차요금과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하고, 초과 10분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주차요금) _____ _____ _____. 다만, 정기주차요금과 주차요금 감면에 _____ _____.</p>